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무배당 ABL우리들의달러연금보험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달러)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환테크 목적의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 이 보험상품은 해외 금리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 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율확정기간 적용(거치형 5년/10년 이율확정형)으로 은퇴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BL생명

(무)ABL우리들의달러연금보험



최저보증이율

5년 or 10년 이율확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은퇴자산 확보



보너스지급

▶ 장기유지보너스 :

- 5년이율확정형 -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1.0%
- 10년이율확정형 -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2.0%



생활자금 수령 / 미수령 선택 가능

- ▶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10년 이율확정형, 생활자금 매월 지급 선택 시)
- ▶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 지급



유연한 자금활용(추가납입&중도인출)

- 가입 이후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해 환율과 경제사정에 따라 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달러가치가 원화에 비해 하락하는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입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1%
- 해당 기능을 통해 노후자금 외 필요한 달러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학자금, 여행자금 등)



\$ 추가납입

시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한도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 이내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수수료	추가납입보험료의 1%

※ 추가납입보험료는 이율확정기간과 관계없이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중도인출

시기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단,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 인출가능합니다.)
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4회 까지 인출
한도	1회 당 US \$100 이상 US \$10 단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만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 주계약

상품구성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 나이(Y)	기본 보험료
거 치 형	5년이율 확정형	일시납	0세~(Y-8)세	45세~80세	US \$ 15,000 이상
	10년이율 확정형		0세~(Y-10)세		

-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세입니다.
- ※ 이율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보험 계약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하게 됩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1-시장가격 조정률(MVA))을 곱한 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결정되며, 해당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 별도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단, 시장가격 조정률(MVA)계산 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재해장해보험금

지급 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금액	US \$ 50,000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주)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생활자금

지급 사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시기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다만, 계약체결 시점에 신청한 계약에 한함)	
지급 금액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지급주기(매월, 매년)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지급 주기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	
매월	5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 (60회지급)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 (120회지급)
매년	5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5회지급)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10회지급)

(주)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 생활자금을 차감하여「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연금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 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체증형	<p>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 (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소득 보장형	<p>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 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금액	<p>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 연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을 (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

최초 가입시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연금'을 지급하며, 약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노후설계자금

지급 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다만, 1회에 한함)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이율 확정 기간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2. 연금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년~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소득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1-노후 설계자금 선택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다.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 선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라.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지급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 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 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에는「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차계산을 하여 적합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 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 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 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4.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 됩니다.**

연금전환특약

연금전환	연금전환조건
(무)자유로연금 전환특약	1) 이율확정기간이 지난 계약 2) 전환신청일 기준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3)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무)LTC연금 전환특약	
(무)6대질병연금 전환특약	

※ 연금전환특약(무)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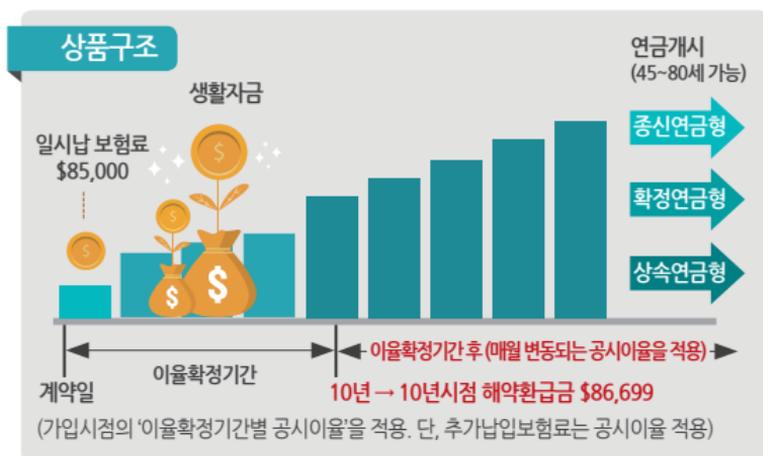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자금 수령 선택시

생활자금 수령액 **매년 \$3,886**

- 생활자금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시기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단,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생활자금 지급금액 :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지급주기(매월, 매년)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가입기준 : 10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성, 금액 US \$85,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5.22% (2025년 6월 16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 : 60세]



2 생활자금 미수령 선택시

이율확정기간 10년 유지시 **해약환급금 \$136,089**

[가입기준 : 10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성, 금액 US \$85,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5.22% (2025년 6월 16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 : 60세]



-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 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달러)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이율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보험 계약 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하게 됩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한 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결정되며, 해당 공시이율을 결정 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와의 변동폭이 0.5%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 별도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 ※ 상기 예시는 이 보험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환급률은 기준금리 변동 등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장기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것입니다.

3 해약환급금 예시표

·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 가입기준 : 5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자, 60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US\$15,000, 생활자금 미선택, 단위: US\$(2025년 6월 16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4.65%)

경과 기간	최저해약환급금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최저 보증이율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시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4.89% 가정)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4.65% 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4.89% 가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1,942	79.6%	13,643	91.0%	14,593	97.3%
6개월	12,028	80.2%	13,808	92.1%	14,716	98.1%
9개월	12,116	80.8%	13,974	93.2%	14,841	98.9%
1년	12,205	81.4%	14,143	94.3%	14,968	99.8%
3년	13,254	88.4%	15,953	106.4%	16,411	109.4%
5년	18,212	121.4%	18,212	121.4%	18,212	121.4%
10년	18,937	126.2%	22,897	152.6%	22,897	152.6%
15년	19,213	128.1%	28,844	192.3%	28,844	192.3%
20년	19,495	130.0%	36,395	242.6%	36,395	242.6%

·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 가입기준 : 10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자, 60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US\$15,000, 생활자금 미선택, 단위: US\$(2025년 6월 16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5.22%)

경과 기간	최저해약환급금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최저 보증이율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시 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4.89% 가정)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5.22% 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4.89% 가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1,958	79.7%	12,440	82.9%	14,272	95.2%
6개월	12,061	80.4%	12,607	84.0%	14,413	96.1%
9개월	12,166	81.1%	12,776	85.2%	14,555	97.0%
1년	12,272	81.8%	12,948	86.3%	14,699	98.0%
3년	13,474	89.8%	14,762	98.4%	16,292	108.6%
5년	14,850	99.0%	16,895	112.6%	18,128	120.9%
10년	24,014	160.1%	24,014	160.1%	24,014	160.1%
15년	24,418	162.8%	30,262	201.8%	30,262	201.8%
20년	24,832	165.6%	38,196	254.6%	38,196	254.6%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다만, 이율 확정기간 동안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이내에 실제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20%를 최고한도로 하며, 이율 확정기간 이후에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상기 예시된 금액 중 『최저해약환급금 가정(이율확정기간 이후 최저보증이율 가정)』은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액에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최대한도인 20%를 적용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2)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시 가정(이율 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가정)』은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 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액에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보다 1.5%p 상승했음을 가정하여 시장가격조정률 (MVA)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현 재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3)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가정(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가정)』은 이율확정기간중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 된다고 가정하여 계약자적립액에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현재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 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가격조정률(MVA)이 변경된 경우 해약환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율확정기간이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1회(1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매월 2회(1일, 16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환금률은 보험료 누계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연금지급형태가 종신연금형인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은 기준금리 변동 및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표의 해약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및 종류

이 보험계약중 다음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 (1) 회사는 해당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채, 회사채, 구조화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합니다.
-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 (3)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원화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이율확정기간 중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이하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한다)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 기준금리1 - 0.55%

기준금리1: 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7-10 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제23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20영업일 동안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20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바.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율확정기간 중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매월 1일과 16일(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한다)에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5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기준금리 2 - 0.14%

기준금리2: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3-5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제8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5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2) 10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기준금리 3 - 0.14%

기준금리3: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7-10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제8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5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바.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0.5\%} \right\} \frac{\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월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4) '라'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 '가' 또는 '나'호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5%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는 별도로 회사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 자. 세부적인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연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체결시점에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자금을 지급하며, 계약자는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할 때 생활자금 지급주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나. 생활자금 지급주기는 매월, 매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 다. 미지급 생활자금에 관한 사항
보험수익자가 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 미지급 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외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가.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달러)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이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환테크 목적의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 다. 이 보험상품은 해외 금리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01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0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모집종사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3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05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07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8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1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3 불만족 접수 안내

<불만 접수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생명보험협회>

- 본사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14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이 보험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이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보험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또는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5 ABL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판매사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0733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콜센터 1588-6500 방카슈랑스사업부 02-3787-7777

2025. 06. 24 방카슈랑스사업부 제작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PA228호(2025.06.24.)
유효기간 : 2025.06.24.~2026.06.23.